

전주지방법원 2021. 3. 2 선고 2019가단175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피고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채훈

변론 종결2020. 12. 15.

판결 선고2021. 3. 2.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6,333,174원과 그 중 25,993,414원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19. 7. 4.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 5. 2. 접수 제82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7.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550만원, 신용보증기한 2018. 10. 16.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C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 A이 경영 악화로(판매부진, 과다경쟁) 2019. 2. 19.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C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6. 14.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C은행에게 25,993,414원을 대위변제 하였으며, 72,930원의 추가보증료와 266,830원의 대지급금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해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2018. 11. 21.부터 연 9%이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9. 5. 1. 피고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 5. 2. 접수 제84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은 94,084,07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가치 있는 재산이 없었고, 원고 외에도 피고 B에 대하여 5,3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C은행에 대하여 합계 1,100만원의 카드론 채무, D조합에 대하여 2,700만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인 E의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남원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구상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25,993,414원, 추가보증료 72,930원, 대지급금 266,830원 합계 26,333,174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25,993,41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7.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터 잡아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40여일 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행에 대한 채무, 피고 B에 대한 채무, C은행에 대한 카드론 채무, D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던 피고 A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피고들 주장에 의하면 일부 대물변제)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된다.

나) 피고 B의 선의 수익자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채무부담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1, 2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피고 A에 대하여 5,300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9.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 B은 피고 A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도 인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피고 B이 피고 A에게 실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전혀 없는 점, 피고 B도 피고 A에게 피고 A이 운영하던 농장 운영자금으로 2015. 11. 24.부터 2016. 11. 20.까지 합계 6,400만원을 대여하고도 그 중 원금으로는 1,100만원밖에 변제받지 못하였고, 2018. 3. 6. 이후 이자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악의 추정이 반복되어 그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은 그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유진

별지